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1. 2. 4. (목) / 총 8매(본문6)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배성, 사무관 백병성 ☎ (044) 201-3993, 3996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담당자 ·과장 이상협, 사무관 유형주 ☎ (044) 200-4886, 4889
보도일시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선보여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의 주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2021년 2월 4일(목)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 엄수 하에 진행)
- 여기서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안)」을,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을 설명하고,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국토부와 공정위는 위 자율준수기준(안)과 표준계약서(안)에 대하여 경제단체와 사업자단체 등에 적극 안내·홍보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확대함은 물론 이들 자율규범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향후 대표적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개최하여 위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공식화하고, 이들 자율규범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1

사업자 간담회 개요

- 우리나라 물류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한 물류거래 도모를 위하여 공정위·국토부 공동주최 사업자 간담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2월 4일(목) 15시부터 개최했다.
- 정부 측은 공정위 사무처장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민간 사업자 측은 현재 종합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요 화주기업(8개사)과 물류기업(10개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 *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안)의 도입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 등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요 >

- ▶ 일시·장소 : 2021년 2월 4일(목) 15:00,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중구 소재)
- ▶ 주요 참석자 : (공정위) 사무처장, 부당지원감시과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물류정책과장
(사업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임원

화주기업 (8개사)	①삼성전자 ②현대자동차 ③기아자동차 ④엘지전자 ⑤롯데쇼핑 ⑥씨제이제일제당 ⑦세아베스틸 ⑧동국제강
물류기업 (10개사)	①삼성SDS ②현대글로벌비스 ③판토스 ④롯데글로벌로지스 ⑤씨제이대 한통운 ⑥한진 ⑦세아L&S ⑧동원로엑스 ⑨인터지스 ⑩유진로지스틱스

※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
[참석자 최소화(회사당 1명), 전원 마스크 착용, 아크릴 가림판 설치, 발열체크 등]

2

자율준수기준(안) 마련배경 및 주요 내용

□ 마련배경

-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들은 내부거래에의 물량 의존도가 높고,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주요 대기업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43.5%)은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12.0%)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계열사에 대한 물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비계열)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대기업집단 스스로 물류 일감몰아주기를 자제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 등에게 일감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 자발적인 물류 일감개방 유도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하여 '18년부터 물류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공정위-국토부 공동)

□ 주요 내용

- (목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물류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여, 좁게는 기업 내에서의 공정·투명한 물류업무 처리를, 넓게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자율규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사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업집단 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특별히 당부
- (주된 적용대상)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계열 화주기업과 계열 물류기업 위주)

○ 5가지 기본원칙 제시

- ① **절차적 정당성 보장**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 선정)
- ② **제3자 물류 확대**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 ③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기존 관행보다 효율성 제고, 경쟁력 구비 노력)
- ④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계열·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금지, 공정거래)
- ⑤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 **(화주기업 준수사항) 일감발주 시와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검토사항을 적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교·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나 입찰을 통한 **일감개방 추진** 독려
- **(물류기업 준수사항) 전문 물류기업으로서 물류활동 수행역량을** 증진하고, 협력회사와의 **공정하고 적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

3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 마련배경 및 주요 내용

□ 마련배경

- 물류시장에서 거래상 지위,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차이 등으로 인한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고,
 - * 물류기업의 계약단계별 애로사항 : (계약단계) 불합리한 단가 인하(47.5%), (이행단계) 비용없이 서비스 요구(65.6%), (정산단계) 대금지급 지연(51.5%)
- 물류시장 내 **공생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계약시 포함하여야 할 기본원칙, 고려사항 등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분쟁 및 피해예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화주기업(55.2%), 물류기업(87.1%) 모두 공감

□ 주요 내용

- (목적)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계약의 기본 원칙, 업무범위, 비용·정산 등 필요사항을 규정
- (세부내용) 계약 관련 협의 및 의사 결정 사항을 ①서면화하고, 도급·수급인의 ②조치·의무사항 및 귀책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③대금지급, 손해배상 등 거래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화

< 표준계약서(안) 주요 내용 >

- ① (기본 원칙) 계약의 목적·구성, 부속서(제1조, 제2조, 제15조), 계약변경·해지(제12조, 제14조), 계약기간(제16조), 분쟁 해결(제17조)
- ② (위탁 업무) 목적물(제3조), 서비스 범위 및 품질(제4조, 제13조), 의무·책임(제7조), 비밀유지(제10조), 양도금지(제11조)
- ③ (비용·정산) 요율·비용정산(제5조, 제6조), 손해배상·면책사항(제8조, 제9조)

※ 표준계약서의 도입·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물류기업인증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 자율준수기준(안)과 표준계약서(안) 마련으로 물류시장에서의 거래구조가 개선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다만,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율규범인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들 자율규범들이 물류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주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참석하는 **협약식**을 개최하여 자율준수 기준과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 물류시장에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국토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 물류시장에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가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물류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1.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안) 요약
 2.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요약

별첨 1.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안)
 2.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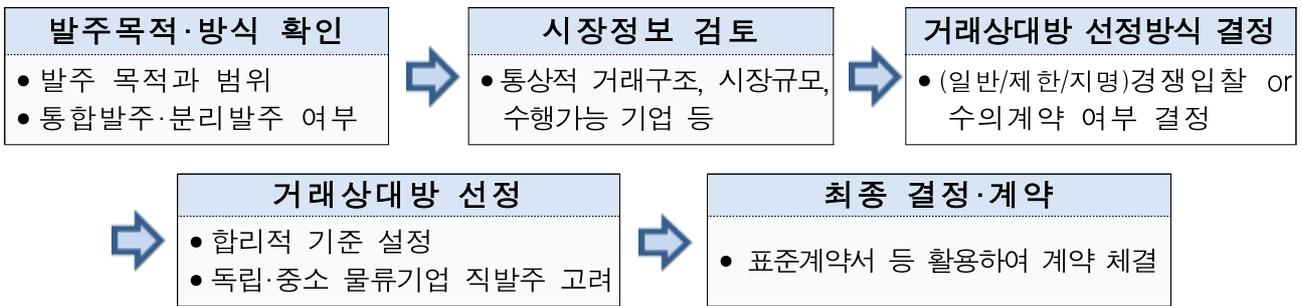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병성 사무관(☎ 044-201-39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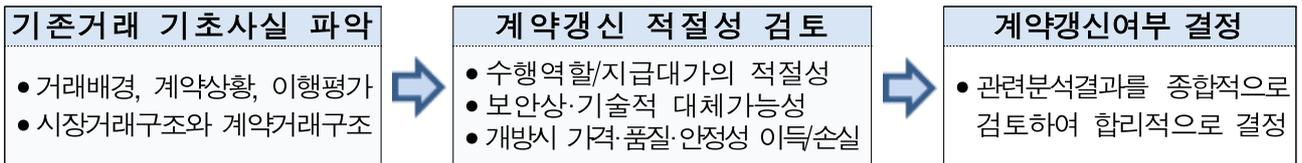
□ (기본 원칙) ①절차적 정당성 보장, ②제3자 물류 확대, ③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④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⑤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화주기업 자율준수 세부기준) 합리적 물류거래를 위하여 발주부서가 참고할 가이드라인과 이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제안

① 물류일감 발주 시 검토사항



②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검토사항



③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발주지침, 심의조직 등) 구축·운영

□ (물류기업 자율준수 세부기준) 전문물류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범적 물류거래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고려할 원칙 제시

① 전문물류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

- 단순 거래단계 추가 행위는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물류자산·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전문물류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

②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 공정거래·상생협력 원칙에 따라 협력회사와 거래하고,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상생 거래문화를 선도

□ **추진 배경**

- 물류시장에서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으로 인한 분쟁 및 피해 발생

⇒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해 물류거래 시 분쟁 및 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 유도

□ **주요 내용**

- (구 성) 물류 거래시 필요한 기본원칙 및 당사자간 권리·책임을 중심으로 ①기본사항, ②위탁업무, ③비용·정산 등 17개 조항으로 규정

<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주요내용 >

기본사항	목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목적 규정 ■ 계약서 본문 외 부속합의서 근거 규정
	계약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변경시 서면 통지토록 규정(30일 이내) ■ 계약의 해제·해지시 근거 마련(최고기간 30일) ■ 계약효력 및 유효기간(만료 3개월 이전 통보)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으로 소송 제기시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
위탁업무	목적물/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물의 범위 규정(화물, 보관용기 등) ■ 서비스의 범위 규정(운송·보관/관리용역 등) ■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준 규정
	의무·책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수급인의 의무 등 책임 규정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 가입 규정 ■ 정보 보안유지 의무 규정
비용·정산	요율·비용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율은 부속합의서 요율표로 정하도록 규정 ■ 비용은 익월 10일까지 청구, 익월 말까지 지급 원칙
	손해배상·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불이행 등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규정 ■ 천재지변 등 면책사항 규정